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701 발의연월일: 2022. 7. 28.

발 의 자: 강민정 · 김두관 · 김상희

김성환 · 김승원 · 김정호

류호정 • 박찬대 • 윤미향

이수진(비) 이 인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올해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·장기적 교육정책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련된 기구이므로 국가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도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,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서로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,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상호간에는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 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0조제2항). 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중 "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"을 "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, 교육감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| 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|
| 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| 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| ② 국가교육위원회, 교육부 및 |
|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| 그 소속 기관, 교육감 소속의 |
|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「지방공 | 교육전문직원 상호간에는 |
| 무원법」 제30조의2에도 불구 | |
| 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 | |
| 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 | |
| 를 할 수 있다. | |
| | |